

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우수한 문화재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공고와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 및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 기획·유물분과위원회의 최종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경매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구입공고와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 및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 기획·유물분과위원회의 최종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병국)

○ 본 조례안은 우수한 문화재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공고와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 및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 기획·유물분과위원회의 최종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됨.

○ 현재 유물 구입은, 유물구입공고→유물수집실무위원회 평가(1차)→유물평가위원회 평가(2차)→개관준비위원회 기획·유물분과회의 평가(3차)→유물구입 계약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경매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긴급성을 고려하여 3단계 과정중 중간단계인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만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 요구한 부분도 국가 또는 시·도 지정 문화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입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국가 및 시·도 지정 문화재는 그 최소 가치로 인하여 수집에 어려움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유물로서의 가치가 기왕에 검증된 것인만큼 신속한 수집을 위한 예외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함.

○ 이번에 개정 요구된 부분 외에 동 조례 제5조(유물기증) 제1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인용 조문 중 “제25조”는 '99년도 12월 동법 개정시 내용 변경 없이 “제8조”로 개정되었으므로 동조례 제5조 역시 개

정되어야 함.

※ 제5조(유물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가. 수정이유

1999년 12월에 개정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이용 조문을 개정 조항에 맞게 수정

나. 주요골자

○ 제5조1항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25조”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8조”로 함(제5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 등 기타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2.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4. 전국체육대회·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p>1.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체육진흥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2. 체육관련 단체의 임직원 3. 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체육관계자 4. 관계공무원 및 기타 체육전문가 ④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체육진흥담당과장이 된다. ⑤심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5조(수당 등) 심의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안정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이 될 때까지 운용하지 아니한다.</p> <p>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p> <p>제8조(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담당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p>	<p>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용조례를 준용하며,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2001. 1. 1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2중 중학교(동부)의 승인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승인여자중학교"를 "승인중학교"로, 진농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진농여자중학교"를 "전일중학교"로 하고, 용마중학교란 다음에 상봉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중학교(서부)의 연희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연희여자중학교"를 "연희중학교"로 하고, 중학교(북부)의 도봉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도봉여자중학교"를 "신도봉중학교"로, 상계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상계여자중학교"를 "상계제일중학교"로 하며, 중학교(동작)의 강남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강남여자중학교"를 "강현중학교"로, 봉천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봉천여자중학교"를 "봉원중학교"로, 상도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상도여자중학교"를 "상현중학교"로 하고, 중학교(성동)의 성수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성수여자중학교"를 "성원중학교"로 하며, 중학교(성북)의 번동중학교란 다음에 수송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학교(동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번호</th> <th style="width: 40%;">명 칭</th> <th style="width: 50%;">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상봉중학교</td> <td>중랑구 상봉1동 282</td> </tr> </tbody> </table>	번호	명 칭	위 치	20	상봉중학교	중랑구 상봉1동 282
번호	명 칭	위 치					
20	상봉중학교	중랑구 상봉1동 282					